
Policy and Law Report _Vol.17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1.16.~1.29.) -

January 30,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u>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u> 정부는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인공지능 일상화 계획, 고용행정데이터·통계데이터의 개방확대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3개년('23년~'25년) 국가 청사진 제시 △ 인공지능 등 신산업 필요 데이터의 전략적 생산, 해외데이터·연구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공유 △ '원(ONE) 윈도우' 구축으로 쉽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하는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천개까지 확대(~'25), 데이터 거래사 1천명 육성(~'25) △ 규제혁신으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民官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 맞춤형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23, 10개 분야) 및 선도서비스 확산 등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청년·지역기업 육성, 선도기술 확보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견인 - 초중고 인공지능·데이터 교육 선도학교('22, 1,095교 → '26, 1,820교) 증설 -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 → '25, 10개) 및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 신설(~'25, 5개) -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23, 200억원) 확보 -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27, 1만건) - 청년·소상공인 집중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천명 양성 -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4~)	2023-01-26

부처	내용	일시
	<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 도약 추진 목표 데이터 시장 규모  50조원으로 성장 '21년 23조원, K-DATA 데이터 활용 역량  10위권 내 돌입 '22년 34위, IMD 기업 데이터 도입률  30%이상 달성 '21년 16%, K-DATA 중점 추진과제 1 생산·개발·공유 - 신산업 창출 지원 전략적 데이터 생산·공유 - 민관 협력 기반 혁신적 데이터 공유·활용 - 수요자 맞춤 공공데이터 개방  2 유통·거래 - 데이터 산업지원 'One-윈도우' 구축 - 新데이터 유통·거래 제도 도입·안착 - 연계 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 유통·거래 민간 역량 강화  3 보호·활용 - 데이터 보호·활용 규제 혁신 - 정보주체 데이터 주권 확대 - 가명정보 제도 활용 촉진 - 데이터 보호·활용 인프라 강화 -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이용 보장  가치 사슬 4 산업기반 국민의 데이터 문해력 제고 산업수요 맞춤 데이터 인력양성 데이터 기반 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세계적 수준 데이터 기업 육성 초일류 데이터 기술 경쟁력 확보	

부처	내용	일시
	<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핵심 추진사항 >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핵심 추진사항 1 우리 사회 역량을 총 결집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발굴·공급  국가 데이터 자원 2 검색 한번으로 데이터를 쉽게 거래하고 활용하는 ‘최상위 인프라, Platform of Platforms’  3 활용 저해 요소 혁신 1. 규제개선 - 법제정·변경 운영 2. 인식 제고 - 의료, 통신, 우정 등 국민배경 마이데이터 서비스  3. 안전한 활용 - 데이터 안심구역 - 데이터 보호기술 4.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 - 데이터 윤리 확산 - 공정한 데이터 접근을 위한 원칙 4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 주도할 인력, 기업 양성 국민의 데이터 문해력 제고 - 디지털 배움터(1천개) 데이터 교육과정 -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1,820교, ~'26) 데이터 인력양성 - 데이터 과학 대학원(현재 5개 → ~'25, 10개) - 산업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25, 5개) 기업의 디지털 전환 - 문제해결은행 등 디지털 전환 지원 1만건(~'27) 디지털 청년·지역 기업육성 - 지역 AI·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4) - 청년 기업 1천명 양성(~'23)	

부처	내용	일시
	②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 국민과 디지털혜택 공유,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창출, 산업혁신을 위한 인공지능사업 추진 △ 국민 일상생활, 행정·입법·사법 등 공공영역, 전산업 분야로 인공지능 전면 확산 -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 -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23년 150개 과제, 400억원) -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도 새롭게 추진 △ 인공지능 기반(데이터, 컴퓨팅파워), 초거대인공지능, 인공지능·데이터이용권 등 인공지능기업 성장 지원 - 신규 8대 분야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23년, 2,805억원) - 초거대인공지능 모형 및 지피유 컴퓨팅 자원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을 탄탄히 제공하여 인공지능기업 성장 뒷받침 -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AlaaS) 개발 및 국내 우수 인공지능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 차세대인공지능·난제해결인공지능 등 초격차 기술 확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기반 ‘케이-클라우드’ 추진 - 차세대인공지능(’22~’26, 2,655억원)와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23~’27, 445억원) - 엔피유·팜·첨단패키징(’23년 668억원) 등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 -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24년 신규 기획) -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 -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인공지능서비스를 적용하는 ‘케이-클라우드’ 사업 추진 △ ‘디지털 권리장전’,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선도’ 등 디지털 新질서 정립	

부처	내용	일시
	<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안) > “ 인공지능 초일류 강국 도약 ” 추진 목표 3대 기술강국 '21 89.1 '27 95 美 대비 (ITP, '22) AI 시장창출 2.6조원 6.6조원 '21 '27 (인공지능 실태조사, '22) AI 일상화 기업 AI 도입율 14.7% 50% '21 '27 (KISDI, '21) AI 전문기업 339개 1,000개 '21 '27 매출액 50억원 또는 투자유치 20억 10대 프로젝트 1 대형 수요 창출로 AI 산업성장 견인 1 전국민 AI일상화 프로젝트 2 공공·산업 AI 전면융합 프로젝트 3 AI기업 스케일업 프로젝트 4 인공지능 글로벌화 프로젝트 2 AI 기술·인프라 선도로 국가 AI역량 혁신 5 AI 기술 초격차 프로젝트 6 AI 연구거점 조성 프로젝트 7 K-클라우드 프로젝트 3 새로운 디지털 질서 모범모델 제시 8 디지털 新질서 정립 프로젝트 9 법·제도·규제정비 2.0 프로젝트 10 AI 신뢰성·윤리 선도 프로젝트	

부처	내용	일시
	③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 ⇒ 일자리 부조화 해소,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 견인을 위한 데이터 전면 개방 △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 개방 △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구인수요 등 그간 미공개 정보 개방확대 지속 추진 ④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 ⇒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정부·기업·개인의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 △ 인구·가구, 기업, 취업활동 등 맞춤형 통계등록부 구축·제공 △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등 활용 확대 △ 민간 협업을 통한 가계별 부채현황 및 특성 분석 △ 자연재해 통계 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산업통상 자원부	•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국정과제 17)”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실물경제 위기 극복과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기업 수 1만개, 수출 2,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정부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을 제시함 * 중소기업과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닌 기업(기업수 5,480개사, 수출 1,138억불, '21 기준) 이를 위해 「15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전환에 향후 10년간 R&D 약 1.5조원(총사업비 기준)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이 신사업·신기술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중견기업 4대 전략적 역할」 강화 중견기업 4대 역할 1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2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3 디지털 전환 선도 4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중견기업 15대 핵심산업 경쟁우위 확장형 (10대 산업) - 반도체: 전력·시스템 반도체, 메모리소자 설계 등 - 디스플레이: OLED, 풀엑서셀 DP, 마이크로 LED DP 등 - 이차전지: 양극소재, 고에너지 리튬전지 등 - 미래 모빌리티: 고효율 경량화 부품, 자율주행 시스템 등 - 핵심소재: 고기능 비철금속, 극한환경 대응 등 - 첨단바이오: ICT 융합 진단기기, 생체적합 소재 등 - 에너지 신사업: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풍력 부품 시스템 등 - 첨단제조: 차세대 지능모형, 제어시스템 등 - 스마트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등 - 미래형 조선: 친환경 기자재, 수락개조 시스템 등 경쟁우위 창출형 (5대 산업) - AI로봇: 협동로봇, 서비스 로봇 등 - 항공: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드론 등 - 차세대 원자력: 스마트 안전 부품, 핵융합 등 - 차세대 정보통신: 차세대 보안기술, IT융합 SW 등 - 스마트 건설 엔지니어링: 스마트설계, 시공기술 플랫폼 등	2023-01-16

부처	내용	일시
	② 중견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 (신사업 발굴) 중견기업의 신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혁신 주체와 만나 신사업·신기술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 얼라이언스, 산학연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 예정 - (기술 확보) 기술 확보 단계에서는 중견기업 R&D를 “신청→평가→선정” 전주기에 걸쳐 투자 촉진형으로 전환하여, △R&D 신청시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민간 금융과의 사전 투자유치 설명회(IR)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 단계에서 금융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며, △사전에 투자를 받은 기업은 R&D 선정시 우대 계획 - (투자·재원확보)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단계에서는 중견기업이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민간 성장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나갈 방침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형 제도 기반 조성 -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본법 중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법적 안정성을 완비하고 새로운 지원 특례 발굴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 지속 협의	
	•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지자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를 개최함 금번 설명회는 작년 11월 9일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향후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기업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됨 * '22.11.9 간담회 이후 지자체,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책 추가·보완 후 금번 설명회에서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의 계통파급효과 평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계통 신뢰도 및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 : 대규모 전력사용 전기사용 예정통지 및 신청이 본 고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 공급을 유예할 수 있음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 5MW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을 거부	2023-01-18

부처	내용	일시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한전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계통평가 강화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5MW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 활용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 * 전력사용자의 전력사용 계획(예:자가발전 일부 설치) 미이행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보완명령·공사중지 등 사후관리 용이 ②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및 정보제공·컨설팅 지원 -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 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한시(‘23.6~’26.5)제공후, 수요 분산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기간 연장 및 할인 규모 확대 검토 -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하여 제공 ③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한 입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	
	•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분야 252개 신규과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바이오 R&D에 총 2,746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고, 시장 중심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BM)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바이오의약 분야 -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개발과 함께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 지원 - mRNA백신 등 최신 플랫폼 기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국산화 및 대량 공정 기술 개발 지원	2023-01-20

부처	내용	일시
	② 의료기기 분야 -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 및 재난 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 병원-기업간 공동 R&D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 촉진 ③ 헬스케어 분야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비약물 치료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 지원 - 5G 기술을 활용한 생체 건강정보 측정·관리·분석 시스템 개발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④ 바이오소재 분야 -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체소재 발굴을 통한 신소재 개발 지원 - 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 및 탄소중립형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함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임 < 2023년도 근로감독 추진방향 > 목 표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과제 01 법과 원칙 확립 ① 5대 불법·부조리 근절 *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직장내괴롭힘 ⑤불공정채용 ② 엄정한 특별감독 + 과제 02 취약한 노·사 보호·지원 ①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② 영세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 강화 과제 03 근로감독 제도 내실화 및 역량강화 * 정기감독 면제제도 개선,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 개시(3월-) 등	2023-01-17

부처	내용	일시
	① 5대 불법·부조리 근절 • (포괄임금 오남용)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 실시 및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 추진 -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 집중 점검 • (임금체불)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 실시 -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 착수 • (부당노동행위)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실시 및 적극적인 기획감독 추진 • (직장내 괴롭힘) 보건·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 강화 - 직장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 위반 사업장 즉시 과태료, 지역 중소기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 기획감독 추진 등 불법행위 엄단 • (불공정 채용)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 실시 → 입직·채용단계부터 공정 기틀 마련 ② 영세 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 강화 •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편)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보다 밀도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테마, 취약분야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홍보 등 캠페인 실시 *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서면근로계약 체결, ** (예시) 외식업 분야 등 분기별로 특정분야 선정 - 특히, 올해부터는 입직 前 청년(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대상 기초 노동법 교육, 캠페인 강화 → 국민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인식 제고 • (30인 미만 근로시간 등 법 준수 지원)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집중 →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한 투자 허용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2023-01-19

부처	내용	일시
	-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예: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 -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의 영문공시 의무화 ('24년~) ②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 발행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월)과 동일한 원칙 적용 - (토큰 증권 규율체계 마련)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허용 i)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 전자증권법 : 계좌부 기재방식으로 분산원장 인정→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 부여) ii)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전자증권법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iii) 투자계약증권 · 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 자본시장법 : 투자계약증권 ·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1.26. 시행, 다만, 제29조제3항은 2023.3.31. 시행 예정)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별도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180호, 2022. 12. 30. 공포, 2023. 3. 31. 시행)됨 이에 따라,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예정가격을 해당 증권의 수납가액에 일정 기간 동안의 관리 비용 등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대부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사실을 매매계약 체결일 1개월 전까지 대부받은 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이나 신탁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여 소송 수행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8조,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29조 제3항 신설, 제40조제2항제2호 등)	2023-0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2.19. 시행 예정) 전파응용설비의 운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의 작성 항목 중 운용 허가 검토에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용 허가 신청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별지 제55호서식, 제56호서식)	2023-01-18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5. 시행) 스포츠 및 국제경기대회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에는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운영하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이 국무총리와 함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 제4조제1항~7항, 제5조제1항 등)	2023-01-2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1.17. 시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고, 그 적용시기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7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 (별표 1에 제22호 신설) * 최적가용기법: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 기법들로 구성된 환경관리기법	2023-01-17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1.27. 시행)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수도공급설비 중 마을상수도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제6조제1항에 제6호의2 신설, 제10조제1호, 제16조제1항제2호 등)	2023-01-27
금융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1.17. 시행)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제8조제6항)	2023-01-17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탁주·맥주의 종량세율을 주류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한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명칭과 사용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탁주·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는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70%를 반영한 3.57%로 하고, 이에 따라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은 1킬로리터당 44,4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85,700원으로 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 적용함 (안 제7조제1항) ②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소주 첨가재료 중 '당분'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안 별표 1) ※ 의견 제시기간 : 2023/1/19(목)~2/3(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2023-01-19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류 유통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주류제조사 등이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류 판매업의 종류 중 현행규정에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주정도매업 및 주류소매업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제7호)	2023-01-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관광진흥법」제17조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 관광사업자의 경우, 주류 판매업면허가 의제됨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9조 제5항제3호 신설) ③ 주류 위탁제조 시 자동계수기 및 납세병마개·납세증표의 사용 주체를 주류 제조 수탁자로 하고,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 납세병마개·납세증표 사용신고 주체를 주류 제조 위탁자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30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안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④ 주류 저장 시설인 주류하치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류제조자도 주류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확대함 (안 제36조제4항) ⑤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의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분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경품 제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안 제41조제3항 단서 신설) 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기존 판매장을 분리 후 신설하기 위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면허 취득요건을 완화함 (안 별표 3 제5호) ※ 의견 제시기간 : 2023/1/19(목)~2/3(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 및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보고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이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비율 계산방식을 규정함 (안 제2조제6항 신설)	2023-01-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함 (안 제3조제1항9호) ③ 신탁세제 관련 세부사항을 보완함 (안 제3조의2제1항, 제2항) -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탁의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위탁자와 특수관계인으로 구분 설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 신탁의 위탁자에게 과세함 ④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로 양도금액을 산정함 (안 제11조) ⑤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과세체계 변경 사항을 규정함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액으로서 보험감독회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세법상 수익으로 하고, 책임준비금 증가액으로서 보험감독회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세법상 손비로 규정함 (안 제11조10호 및 제19조23호) - 보험회사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 할인액, 보험료 등, 보험금 및 보험과 관련된 사업비 등을 보험감독회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세법상으로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함 (안 제70조제3항, 제6항 신설) -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금액을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59조 신설) - 보험회사의 회계기준이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환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익금 산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규정함 (안 제78조의3) ⑥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7조의4 신설)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 규정함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 및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히 함 ⑦ 해외건설사업자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의2제6항제6호 신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⑧ 공익법인 등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 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39조제6항) ⑨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소득 실질 귀속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86조의3) ⑩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163조의3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023/1/19(목)~2/3(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강화하며,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상향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 범위를 조정하며, ‘25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금융투자상품 소득계산방식 등 집행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간접 취득한 경우 그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손익을 비과세함 (안 제26조의2) ②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2) ③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으로 변경하고,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 (안 제78조 등)	2023-01-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④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확대하고 미가입시 필요경비를 전액 손금 부인하도록 함 (안 제78조의3) 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입학 전형료를 추가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 (안 제118조의6) ⑥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 (안 제155조제1항) ⑦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과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여 상생임대 활성화를 지원함 (안 제155조의3) ⑧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과세율이 배제하는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 (안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⑨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절차 등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212조의4 신설) ⑩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에서 식사대 등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214조) ⑪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추가함 (안 제216조의3) ⑫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집합투자증권, 채권, 상장지수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계산 방법, 원천징수 제도 등을 보완하고 공모 국내주식형펀드 판단 기준,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함 (안 제26조의2, 제150조의6부터 제150조의8, 제150조의12, 제150조의13, 제150조의15, 제150조의17부터 제150조의22까지, 제150조의26, 제203조의2, 제203조의4) 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기간 조정 및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안 별표2) ⑭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함 (안 별표3의2) ⑮ 앰블런스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에 추가함 (안 별표3의3) ※ 의견 제시기간 : 2023/1/19(목)~2/3(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양도를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급 의무기간을 연장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사업자간 거래에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을 착오함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한편 자료제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11조, 제70조)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건축물·토지 인도·양도의 실질이 수용과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추가함 (안 제18조) ③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을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함 (안 제68조) ④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함 (안 제71조) 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래건당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함 (안 제71조의2) ⑥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제한사유로서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함 (안 제72조) ⑦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을 착오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이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고,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안 제75조) ⑧ 유튜버 등이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를 첨부서류 제출시 해당 공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101조제1항제10호)	2023-01-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를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함 (안 제121조) ⑩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료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 의견 제시기간 : 2023/1/19(목)~2/3(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법무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항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적시에 경료할 필요성이 큰 반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 경료 후에도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 사실을 즉시 고지받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 (제3조의3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제292조제3항)을 추가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3제3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1/19(목)~2/2(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제출	2023-01-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 사항,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율 조정, 행위유형별 과태료 상한액 내 차수별 금액 조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명칭 변경 - 개정법률에 맞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② 특정물질의 종류 등 (안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 - 제1종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및 제2종 특정물질(HFCs)의 종류 등을 각각 별표 1과 별표 2로 규정함 -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을 별표 2의 XI에 해당하는 물질로 정함 ③ 부담금의 산정기준 세부 사항 (안 제10조의4, 별표 3) - 제1종 및 제2종 특정물질 각각의 계산식을 별표 3으로 규정함 ④ 체납부담금 가산율 조정 등 (안 제10조의7) - 개정법률에 맞춰 가산금 총액 상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고, 체납일수 1일당 가산율을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조정함 -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⑤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20조, 별표 4)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반차수 및 누적회차 기준을 반영하고, 과태료 상한액 내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1/17(화)~2/2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로 제출	2023-01-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u>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u>」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륜차를 수입·판매하려는 자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에 속한 자는 인증시험 받을 차량 1대를 업체가 선별하여 시험받고, 이를 통과하면 최대 500대의 이륜차를 시험 없이 인증생략받는 등 당초 인증제도의 취지와 달리 편법으로 인증·인증생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증시험 받을 차량을 시험기관이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보도록 하고, 수입자 단체에 속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대 99대까지만 인증생략 가능토록 하는 등 인증제도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는 1대만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최대 500대의 개별이륜차를 시험 없이 인증생략할 수 있던 것을 최소 21대 이상 동시에 통관한 경우에만 최대 99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안 제4조제1항제5호) ②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수입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50%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50대의 자동차 (안 제4조제1항제6호) ③ 시험자동차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자동차 및 최초 인증시험 결과 최종 합격을 받지 못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는 인증을 생략할 수 없음 (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④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안 제8조제11항) ⑤ 한국환경공단이 개별자동차 인증생략 신청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실시할 수 있던 것을 반드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하도록 의무화 (안 제8조제12항) ⑥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동차제작자가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증을 생략받기 위하여 동일차량을 수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을 즉시 중단 (안 제29조제3항) ⑦ 인증시험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인증시험의 속행, 부적합 원인을 개선한 후 인증재신청, 해외로의 반출, 폐기 중 하나의 조치를 1년 내 이행토록 규정 (안 제32조제2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1/16(월)~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로 제출	2023-01-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9건)이 변경됨에 따라 설치 및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검사표 정비 - 설치 및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현행화 (별지 제4호서식~제21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 내 적용할 검사표 명확화 (안 제7조) ② 검사표 정비 - 유해화학물질 변경·추가에 따른 설치검사 제외 대상 명확화 (안 제4조) - 검사결과 처리 기준일 현실화 (안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 의견 제시기간 : 2023/1/16(월)~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안전과)로 제출	2023-01-1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감경하며, 시·도지사가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의 확대 (안 제8조) -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지방·유역환경청장으로 확대 ②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근거 도입 (안 제17조) - 기존에 매장수 100개 미만의 사업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를 시·도지사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③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기준비용 조정 (안 별표6)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감경	2023-01-2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2023/1/20(금)~3/2(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재활용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조정 (안 별표6) - 재활용 시장여건에 맞게 재활용 기준 및 방법 조정 ※ 의견 제시기간 : 2023/1/27(금)~3/8(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2023-01-27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하는 의약품 유통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 중 일정기간 동안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운송할 때에는 해당 의약품의 입·출고 시 보관 온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수송설비 내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를 온도계 등 설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별표 6 제7호마목) ※ 의견 제시기간 : 2023/1/26(목)~3/2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	2023-01-2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내부거래 중심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가 집중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 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1/17(화)~2/2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시점검과)로 제출	2023-01-17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매년 분기별 또는 연 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공시하던 기업집단현황 관련 항목들 중 활용도가 낮은 일부 분기별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통합함으로써 공시대상 회사들의 공시 관련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이와 동시에 정보이용자들이 해당 공시대상 회사들의 연간 거래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매 분기마다 공시하는 12개 항목 중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 항목으로 전환·통합하는 내용임 (안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1/17(화)~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시점검과)로 제출	2023-01-17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동일인이 공시기한 이후에라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공시지연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간을 조정하는 등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2023-01-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는 한편, 지연일수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감경비율을 세분화함 (안 V. 3. 가. 및 V. 3. 다. (4)) ※ 의견 제시기간 : 2023/1/17(화)~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시점검과)로 제출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이 공시기한 이후에라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공시지연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간을 조정하는 등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는 한편, 지연일수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감경비율을 세분화함 (안 V. 3. 가. 및 V. 3. 다. (4)) ※ 의견 제시기간 : 2023/1/17(화)~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시점검과)로 제출	2023-01-1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온라인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의 조작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안 제9조)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안 제12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안 제29조)	2023-01-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⑥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 「<u>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u>」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2023-01-18
기획재정 위원회	• 「<u>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2월 법률 개정 당시, 타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2023-01-17
	• 「<u>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u>」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가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2023-01-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사전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제5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71조제2항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하고,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과 함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 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제91조의15 등)	2023-01-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가산단으로써, 2022년 12월 기준 분양체결 기업 수는 126개, 분양률은 72.4퍼센트에 달하며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023-01-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식량안보와 맞물려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종료될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뿐더러 관련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3년 이상의 가입기간으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청년들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과세특례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펀드에 대한 세금경감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청년펀드 상품을 준비하는 기간이 늦어져 2023년 1월 현재 관련 상품이 판매되지 못하고 있음. 이달 안에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세제경감이 올해 말이면 종료될 예정으로 제도안내·상품홍보 등 마케팅 후속 일정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또한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펀드이지만 가입조건이 다른 금융상품 보다 비정상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청년혜택 제도가 오히려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의3)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7조), 월세 세액공제(동법 제95조의2)와 보금자리론은 물론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금융 대책으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까지 모두 가입 또는 신청기준이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것과 비교해 청년펀드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로 일반 서민금융 정책과 비교해 지나치게 소득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 이에 청년들이 해당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청년펀드의 가입요건을 다른 서민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천8백만원에서 5천3백만원으로 정상화시켜 청년펀드 제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안 제91조의20)	2023-01-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1인)」 과거 이동통신 3사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한 알뜰폰 업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3년간의 한정적 기간동안만 시행하려 하였던 제도였지만, 3차례 연장을 통해 약 10여 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왔음 그간 알뜰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1년에는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기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3%를 차지('22년 10월 기준)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이동통신사들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도 역시 적극적인 도매제공 정책을 통해 알뜰폰 시장 확장에 나서는 등, 사실상 알뜰폰 시장은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 알뜰폰 산업이 자립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의 설비투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 등 알뜰폰 사업자 운영 실태조사에 근거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차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중심으로의 제도 변경이 필요한 때임 하지만 이미 '22.9월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일몰된 상황에서 그대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충격이 우려되므로, 한 차례에 한하여 일몰을 연장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그 대신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대가의 산정은 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정책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 다만,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및 관련 협정 체결을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대가를 인상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후 검토 과정을 두어, 대가 인상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이 포함된 경우 신고를 반려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의 산정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한 신고 수리 반려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동 조항에 대한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안 제38조제4항, 제7항 및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2023-01-1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u>」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의2 신설)	2023-01-20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u>」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소통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이전보다 큰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사회적 이슈에도 댓글을 통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희생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성 댓글들이 작성되면서 그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바, 댓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비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동안 부적절한 댓글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었음.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회구성원의 기본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헌법상 일면적 가치 보호만이 강조되기보다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둘러싸고 희생자의 댓글 피해와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바 공동체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재난과 관련한 댓글 문제 해결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에는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댓글로 인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댓글 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2023-01-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양자역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원자 등의 물질을 조작·분석·제어하거나 정보를 생성, 제어, 계측, 전송, 저장, 처리하는 양자기술은 기존 첨단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로서 미래 국방과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육성을 위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 양자기술과 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양자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하여 양자기술과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양자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자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표준 선점 및 기업 지원, 인력양성과 정착, 연구거점 및 클러스터의 구축, 국제협력 등 전방위적인 육성을 통해 양자기술의 혁신과 양자산업 선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목적 (안 제1조) - 이 법은 미래 국방과 첨단산업 혁신의 동력이 되는 양자기술과 양자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②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전략의 수립 (안 제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이하 “양자발전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함 ③ 기술개발, 상용화, 테스트베드, 표준화, 인력양성 및 정착 등 지원 (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 양자기술과 양자기술 구현에 필요한 양자지원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상용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또한 기술개발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력양성과 관련분야 전공자에 대한 전환교육, 양성된 인력을 정착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④ 양자클러스터 및 연구거점 (안 제22조, 제26조, 제27조) -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을 상호 연계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을 마련함 ⑤ 국제협력, 기업·대학·연구소의 협력증진 및 지원을 위한 특례 (안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 국제협력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기업·대학·연구소의 협력증진과 참여 촉진을 위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	2023-01-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처분받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11항 신설)	2023-01-16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1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서, 해당 세금의 부과·징수를 통해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을 석유·가스 기업과 분담하려는 취지이므로 징수된 횡재세는 사회 취약계층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에너지이용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징수된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7까지 각각 신설)	2023-01-1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해당 기업들에게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23-01-17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서, 해당 세금의 부과·징수를 통해 고유가의 지속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을 석유·가스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그 세수를 소상공인 등 서민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1항제1호, 안 제21조제1항제24호의2 신설)	
	•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u>」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은 석유·천연가스 등을 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서, 해당 세금의 부과·징수를 통해 고유가의 지속에 따른 서민 가계,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석유·가스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그 세수를 중소기업 등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균형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4조제1항제1호 등)	2023-01-17
	• 「<u>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u>」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통상(通常)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전용(專用)실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전용실시권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임에도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2023-01-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통상실시권 요구가 없는 경우,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안 제24조제4항)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LNG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전력을 판매하여도 손해 보는 구조가 지속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전기요금을 여러차례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낮추어 전기요금의 인상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매년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고 있어 동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하므로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부과요율을 1천분의 20으로 법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1조)	2023-01-26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023-01-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84조의2 신설)	
환경노동 위원회	• 「<u>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그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허용보관량 등을 규정하고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하게 됨 그러나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형 건설기업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현행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이 법에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취소처분과 과징금처분 등의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벌금형이 확정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신설)	2023-01-17
	• 「<u>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1주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음 그러나 해당 특례를 규정하였던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인 한시조항으로, 지속적인 일몰연장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추가근로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임	2023-01-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를 고려하여,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조항을 두어 추가연장근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53조의2 신설 등)	
	• 「<u>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u>」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7조)	2023-01-19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1/30(월) 14:00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안건 처리	2.2~2.28.(27일간)
	2/2(목) 14:00	제40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안건 처리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1/30(월)	「소셜시그널」 제32호 발간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3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3호 발간 - 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	
	2/2(목)	「월간 국회도서관」 1·2월호 발간	
예산정책처	1/31(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발간	

[별첨1] 제402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윤리특위	1/30(월) 11:00	전체회의	-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과방위	2/1(수) 13:00	간담회	-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관련 전문가 간담회
문체위	1/30(월) 10:00	체육관광법안 심사소위	-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장애인체육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
	1/30(월) 본회의 산회후	문화예술법안 심사소위	- 법안 심사
	1/31(화) 14:00	전체회의	- 법안의결,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공청회 등
정보위	1/31(화) 14: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30(월) 14:00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1/30(월) 14:00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31(화) 14:00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박성중·홍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1/31(화) 14:00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 메타물질 포럼	하태경·김영식· 신원식 의원실, 과총	의원회관 2세미나실
2/2(목) 09:30	혁신형 SMR 국회포럼	이원욱·김영식 의원실	여의도 글래드호텔
2/2(목) 15:00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	정춘숙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2/3(금) 10:30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태영호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70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1/16(월)	「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3호) 」 발간 - 헌법재판소의 12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 소개	
국회도서관	1/19(목)	「 헌안 외국에선? 」 제51호 발간 -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1/19(목)	국회도서관 웹진 제57호 발간	
예산정책처	1/17(화)	「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 발간	
입법조사처	1/16(월)	「 NARS 현안분석 」 발간 -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미래연구원	1/16(월)	「 Futures Brief 」 제23-01호 발간 -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6(월) 10:00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민병덕·이재정·강득구 의원실, 대한전기협회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6(월) 14:00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8(수) 14:00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	변재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